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22호

무교·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09.06.)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382호(1978.11.30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공고 제292호(1989.03.29.)로 재개발사업 공사완료(을지로1가구역 제5지구)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7호(2012.08.02.)로 무교·다동·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통합)지정된 무교·다동구역 제34지구(완료 지구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10월 27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구역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무교·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구역(변경없음)

나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 정	무교·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	무교동 45, 다동 115, 을지로1가 31일대	109,965.8	-	109,965.8	

다. 사업시행지구 지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 정	무교·다동 제34지구	을지로1가 87번지	5,628.1	-	5,628.1	완료지구

2. 정비계획
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율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5,628.1	-	5,628.1	100.0	-
정비기반시설 등	도 로	458.2	-	458.2	8.14	既 부담 (을지로1가 53, 87-3)
획 지	대 지	5,169.9	-	5,169.9	91.86	-

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사항(변경없음)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라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마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

1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결 정 구 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 비 개 량 계 획 (동)					비 고
	명 칭	면 적 (㎡)	명 칭	면 적 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 축	철 거 이 주	
변경	무교·다동구역 제34지구	5,628.1	획지	5,169.9	을지로1가 87번지	1	-	1	-	-	

2)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수	비고
	명 칭	면 적 (㎡)	명 칭	면 적 (㎡)						
기정 변경	무교·다동구역 제34지구	5,628.1	획지	5,169.9	을지로1가 87번지	업무 시설	32~33 34.6 이하	640~642.7	21/6	완료지구

바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사.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3. 변경사유

○ 재개발사업 완료된지 32년이 지난 무교·다동 제34지구에 대해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옥외 주차장등 공지를 휴게공간으로 조성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증축을 추진함에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경미한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고, 「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」 재생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성코자 함.

4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○ 정비계획 결정(변경)도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.

5. 열람장소

○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(02-3396-5774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